

교회성폭력

이젠

교회가

응답

할때



| 2016년 9월 19일(월) 오후 2시
| 한국기독교교회관 2층 조에홀

| 주최 - 교회개혁실천연대

교회 성폭력
근절을 위한
정책 제안 포럼

순서

사회: **김애희** 사무국장(교회개혁실천연대)

2:00 (10분)	인사말		박득훈 공동대표 (교회개혁실천연대)	
2:10 (15분)	발제 1.	교회 성범죄에 관한 교단 헌법 구조 연구	강문대 변호사 (법률사무소 로그)	p3
2:25 (15분)	발제 2.	해외 교단의 성 정책 자료 조사	김애희 사무국장 (교회개혁실천연대)	p16
2:40 (10분)	질의 응답		김애희 사무국장	
2:50 (50분)	토론	사회: 박득훈 목사(교회개혁실천연대) 패널: 발제자 2인 권대원 집사(삼일교회) 최유진 교수(송실대 겸임교수) 홍보연 목사(감리회 선교국 양성평등위원회 공동위원장)		p25
	참고 자료	단체 소개		p26

1 교회 성범죄에 관한 교단 헌법 구조 연구

강문대 변호사 | 법률사무소 로그

1. 각 교단의 성범죄 규율 실태

1. 교단 헌법에 의한 규율

- 각 교단의 헌법(권징조례) 중 강제로 행하는 성범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헌법은 없는 것으로 확인됨.
 - 범죄 사유를 포괄적이고 추상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교단은 물론이고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교단도 마찬가지로 있음.
 - 감리교단과 예성교단의 경우 성행위에 관한 내용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강제로 행하는 성범죄보다는 혼인 외 성관계와 동성애를 그 주된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위 내용은 각 교단이 성범죄를 처벌 대상으로 삼지 않고 있다는 것은 아님. 단지, 그러한 성범죄를 직접적인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는 의미임.
- 각 교단의 헌법(권징조례)에 범죄로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아래와 같음.

교단	규정	규정 내용
예장 합동	권징조례 제3조 범죄	교인, 직원, 치리회를 불문하고 교훈과 심술과 행위가 성경에 위반되는 것이나 혹 사정이 악하지 아니할 지라도 다른 사람으로 범죄하게 한 것이나 덕을 세움에 방해되게 하는 것이 역시 범죄이다.
	제42조	목사가 이단을 주장하거나 불법으로 교회를 분립하는 행동을 할 때에 그 안건이 중대하면 면직할 것이다(그 행동이 교리를 방해하려 하여 전력으로 다른 사람을 권유하는 형편이 있는지 지식이 부족한 중에서 발생하고 도에 별로 해되지 아니할 것인지 심사 후에 처단함이 옳다).
예장 통합	권징조례 제3조 권징의 사유가 되는 죄과	<p>교인과 직원, 각 치리회가 다음 중 하나이상의 죄과(罪過)를 범한 때에는 재판에 의한 권징절차를 거쳐 책벌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성경상의 계명에 대한 중대한 위반행위. 2. 총회헌법 또는 제규정(이하 헌법 또는 규정이라 한다)에 정해진 중대한 의무위반행위 3. 예배를 방해한 행위 4. 이단적 행위와 이에 적극적으로 동조한 행위 5.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교인 또는 직원의 명예를 훼손시킨 행위 6.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유기한 행위 7. 파렴치한 행위로 국가 재판에 의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범죄행위(양심범의 경우는 제외됨) 8. 재판국의 판결에 순응하지 아니하는 행위 9. 타인에게 범죄케 한 행위 10. 치리회 석상, 교회의 제직회 또는 공동의회의 석상에서 폭언, 협박, 폭행, 상해, 재물손괴 행위 11. 사건 담당직원(재판국원, 기소위원)이 사건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행위 12. 교회 내외(內外)와 각 치리회 및 총회 산하 단체와 기관 사무실 등에서 폭언·협박·폭행·상해·재물손괴·감금·위협과 업무 방해 등의 행위 13. 교회, 노회, 총회 및 총회 산하 단체와 기관과 관련된 문서를 위조·변조, 개인 정보와 문서를 불법 획득 및 유출하는 행위와 각종 증명서 위조 행위 또는 이를 행사하는 행위 14. 교회, 노회, 총회와 총회 산하 단체 및 기관 운영에 있어서의 부정과 공금유용, 횡령, 배임 등의 재정 비리행위 15. 노회, 총회의 감사 위원과 총회 산하 단체 및 기관의 직원 및 이사가 직무 태만 및 고의적 행위로 노회, 총회 각 상임부서·산하 단체와 기관에 상당한 손실을 입게 한 행위
예장 고신	권징조례 제5조	교인과 직원 및 각 치리회가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죄를 범한 때에는 재판에 의한 권징절차를 거쳐 시벌한다.

	권징의 범위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성경에 위배된 치리회의 결정과 교인, 직원 또는 치리회의 위법사건 2. 타인으로 하여금 범죄하게 한 일 3. 성경을 기초해서 교회가 정한 교리, 법규 또는 관례에 위배된 일 4. 덕을 세움에 방해되게 한 일 5. 예배를 방해한 일 6. 이단적 행위와 이에 적극적으로 동조한 행위 7.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교인 또는 직원의 명예를 훼손시킨 행위 8. 온라인(인터넷, 핸드폰, 팩스)과 사이버 공간에 비진리적이거나 불손한 자료를 게시하거나 교회의 건덕과 개인의 신상을 해치는 자료를 유포하는 행위 9.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유기한 행위 10. 파렴치한 행위로 국가 재판에 의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범죄 행위(양심범의 경우는 제외됨) 11. 재판국의 판결에 순응하지 아니하는 현장 범죄행위 12. 치리회 석상에서 폭언, 폭행, 기물파괴 등 현장 범죄행위 13. 사건 담당직원(재판국원, 기소위원)이 사건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행위
기장	권징조례 제3조 범죄	신도, 직원, 치리회의 신앙과 행위가 성경에 위배되거나 규례를 위반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범죄 행위를 하게 한 때에는 범죄가 성립된다.
감리교	재판법 [987] 제3조 범과의 종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교회와 성례를 비방하였을 때 ② 계교로써 교인, 교직자 또는 교회를 모함 및 악선전하였을 때 ③ 교회재판을 받기 전에 교인 간 법정소송을 제기하거나, 교인의 처벌을 목적으로 국가기관에 진정, 민원 등을 제기하였을 때. 다만 '교리와 장정'에 정하고 있는 교회재판에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예외로 한다. ④ 교회 기능과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교회 법정에서 위증하였을 때 ⑤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교인끼리 불화를 조장하였을 때 ⑥ 익명이나 실명으로 유인물이나 인터넷에 개인이나 감리회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행위를 하였을 때 ⑦ 이단 종파에 찬동 협조하거나 집회에 참석한 혐의가 있을 때 ⑧ 음주, 흡연, 마약법 위반, 도박 및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⑨ 절취, 사기, 공갈, 횡령, 공금유용 등의 행위를 하였을 때 ⑩ 남의 재산과 명예를 손상시켰을 때 ⑪ 타인을 상해하였을 때 ⑫ 문서와 증빙서류를 위조하였을 때 ⑬ 부적절한 결혼 또는 부적절한 성관계(동성 간의 성관계와 결혼을 포함)를 하거나 간음하였을 때 ⑭ 그 밖에 일반 형법에 위반되는 행위로 인하여 처벌을 받았을 때 ⑮ 감독 감독회장 선거와 관련하여 교회재판을 받기 전에 사회법정에 소송을 제기

		<p>하였을 때</p> <p>⑩ 감리회가 소집하는 지방회, 연회, 총회 소집이나 진행을 방해하거나 선거의 투표나 개표를 방해하는 행위</p>
	[988] 제4조 교역자에게 적용되는 범과	<p>① 교역자로서 제3조(범과의 종류) 중에 한 가지라도 범하였을 때</p> <p>②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유기하였을 때</p> <p>③ 규칙을 고의로 오용하였을 때</p> <p>④ 감독 또는 감독회장이 적법한 의결을 거쳐 내린 직무상 명령을 불복하였을 때</p> <p>⑤ 갚을 수 없는 채무를 졌을 때</p> <p>⑥ 정당에 가입하거나 또는 직접 정치활동을 하였을 때</p> <p>⑦ 교회를 매매하여 사리사욕을 취하거나 교회담임 임명시 금품을 수수한 때</p> <p>⑧ 이단사상을 설교 또는 저술하였을 때</p>
기성	징계법 제4조 징계에 부칠 사건	<p>1. 교역자를 포함한 모든 교인, 치리회를 불문하고 일반적으로 성경교훈에 준거한 본 교회의 교리, 지도원리, 예배규범, 생활규범을 위반하거나 정체(政體)나 제도 이외의 행동을 취하며 선동하는 사건</p> <p>2.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와 이의 사건</p>
예성	헌장 제9장 포상 및 권징 제106조 권징의 사유가 되는 죄과	<p>성경의 교훈을 기본으로 하고 헌장의 교리와 예배규범 및 생활규범을 기준으로 한다.</p> <p>① 교회와 성례를 비방하였을 때.</p> <p>② 서로 견주어 교인, 교직자 또는 교회를 모함 및 악선전 하였을 때.</p> <p>③ 교직자(목사, 장로)가 교단법에 의한 해결을 기피하고 사회법정에 소송을 제기 하였을 때.</p> <p>④ 교회기능과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교회 법정에서 위증 하였을 때.</p> <p>⑤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교인끼리 불화를 조장하였을 때.</p> <p>⑥ 익명으로 유인물이나 인터넷에 악의적 목적으로 개인이나, 본 교회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행위를 하였을 때.</p> <p>⑦ 이단 종파에 찬동 협조하거나 집회에 참석한 혐의가 있을 때.</p> <p>⑧ 음주, 흡연, 마약, 도박 등을 하였을 때.</p> <p>⑨ 절취, 사기, 공갈, 횡령,公款유용 등의 행위를 하였을 때.</p> <p>⑩ 문서와 증빙서류를 위조하였을 때.</p> <p>⑪ 부적절한 결혼 또는 부적절한 성관계(동성 간의 관계 포함)를 하였을 때.</p> <p>⑫ 그 밖에 일반 형법에 위반되는 행위로 인하여 처벌을 받았을 때(단,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은 권징할 수 없다).</p> <p>⑬ 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이 있을 때.</p> <p>⑭ 총회(실행위원회)의 해임결의에 순응하지 않는 이에 대하여 총회(실행위원회)의 고발이 있을 때.</p>

제107조 교역자에게 적용되는 범과	<p>다음 각 항과 같다.</p> <p>① 교역자로서 제106조 중에 한 가지라도 저촉되었을 때.</p> <p>②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유기하였을 때.</p> <p>③ 헌장을 고의로 오용하였을 때.</p> <p>④ 총회장 또는 지방회장이 적법한 의결을 거쳐 내린 직무상 명령을 불복하였을 때.</p> <p>⑤ 갚을 수 없는 채무를 졌을 때.</p> <p>⑥ 교회를 매매하여 사리사욕을 취하거나 교회담임 이취임시 금품을 수수하였을 때.</p> <p>⑦ 이단사상을 설교 또는 저술하였을 때</p>
------------------------------	---

2. 윤리 강령에 의한 규율

- 교회 내 목회자들에 의한 여러 범죄가 급증하자 각 교단 및 기독교단체는 ‘윤리강령’을 제정하여 이러한 흐름을 차단하고자 하였음.
 - 그러나 모든 교단이 윤리강령을 제정한 것은 아니고, 제정된 윤리강령 중에서도 성범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일부분임.
- 그렇지만, 교회 내에서 금기시되고 은폐의 대상이었던 ‘성범죄’ 문제를 공개적으로 거론하면서 목회자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운 것은 그 의미가 적지 않다고 할 수 있음.
 - 향후 이 문제가 공개적인 공론의 장에서 논의되고 판단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었다고 평가할 수 있음.
- 각 교단 및 기독교단체가 제정한 윤리강령 중 성범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래와 같음.

단체	제정 연도	규정 내용
감리교단	기독교대한 감리회 목회자 윤리강령 2005	<p>2. 우리는 목회자로서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고, 위임받은 사역을 위해 성실하게 헌신한다.</p> <p>1) 우리는 교인들을 사랑과 신뢰로 대하고 인격적인 관계를 유지한다.</p> <p>3) 우리는 교인들과의 상담에서 얻은 정보나 비밀을 누설하지 않으며, 교인들과의 관계에서 성 윤리와 경제적 규범을 철저히 준수한다.</p>
한국교회 목회자 윤리 위원회	목회자 윤리강령 2012	<p>하나, 목회자는 결혼의 존엄함과 가정의 순결을 지키는 일에 본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게 하셨다(창24:4). 그러므로 가정은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와 그리스도의 뜻대로(엡 5:22~27) 거룩하고 순결하게 보존되어야 한다. 우리는 무방비 상태로 노출된 현대사회의 온갖 유혹으로부터 자신과 가정과 교회를 지키는 순결운동에 앞장 설 것을 다짐한다.</p>
예장	대한예수교	<p>1. 개인윤리</p> <p>3) 성윤리</p>

<p style="text-align: center;">통합</p>	<p style="text-align: center;">장로회 총회 목회자 윤리강령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2015</p>	<p>(1) 나는 높은 도덕 수준을 유지하는 순결한 삶을 추구한다.</p> <p>(2) 나는 자신의 성적 자아에 대해 바르게 이해하고, 회중이 자신에 대해 성적 감정을 갖고 있거나, 반대로 본인이 회중을 상대로 성적 감정을 갖고 있을 때 바르게 대처한다.</p> <p>(3) 나는 성적 타락과 폭력 방지에 대한 교단의 교육과 상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동시에 교회 내 사역자 관계 안에서 성희롱이나 성적 남용 및 부정행위를 예방하고 근절시키기 위한 교육을 한다.</p> <p>(4) 나는 사역에 필요한 신뢰를 얻기 위해 필수적인 대인관계의 건강한 경계를 이해하고 사람을 성적인 대상으로 대하지 않는다.</p> <p>(5) 나는 성적인 순결함에 있어서 죄 된 성적 행위나 부적절한 연루를 피하고 유혹을 이기기 위해 성에 대하여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동료를 갖는다.</p> <p>(6) 나는 양성 간의 평등과 정의가 교회 회중에, 더 나아가 사회에서 세워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기윤실</p>	<p style="text-align: center;">목회자 윤리강령 28 2016</p>	<p>2장 목회자와 성도의 바른 관계</p> <p>9. 목회자와 성도의 건전한 관계 목회자는 자신에게 주어진 영적인 권한을 남용하여 성도들을 성폭력의 대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p> <p>5장 목회자와 성 윤리</p> <p>20. 목회자의 성에 대한 이해 목회자는 자신도 성적 존재로 창조된 것을 인정하고 성을 긍정적으로 누리며 살아야 한다. 그러나 목회자의 성적 탈선은 하나님의 공동체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히므로 성을 오용하거나 과도하게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p> <p>21. 목회자의 영적 권력과 성 목회자는 자신에게 주어진 영적 권력을 남용하여 여성도들과 성적 일탈 관계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p> <p>22. 목회자의 성적 탈선의 후유증 목회자가 성적 탈선에 빠지면 영적으로 권위 있는 목회를 할 수 없게 되고, 상대 여성에게 치유 불가능한 내상을 입히며, 교회에 상처를 줄 뿐만 아니라 이웃과 사회를 대상으로 한 복음 사역에 걸림돌이 되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p> <p>23. 목회자의 성적 탈선 예방 목회자는 정직한 자기 인식과 성직자로서의 자아 정체감을 재확인하고, 가능한 한 신체적 접촉을 자제하고 견실한 결혼생활이나 동료 모임을 유지하는 등 성적 탈선의 위험을 미리 감지하고 예방해야 한다.</p> <p>24. 목회자의 성적 탈선에 대한 대응책 목회자의 성적 탈선이 일어난 경우 교회 안에서 적법한 절차를 통하여 정의를 룬게 처리하고 회복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p>

II. 각 교단의 성범죄 처리 실태

1. 성범죄에 대한 막연한 평가와 인식

- 각 교단이나 교회가 교회 내에서 발생한 성범죄를 인지한 경우, 성범죄를 폭행 등 신체상에 대한 범죄나 절도 등 재물상에 대한 범죄와 마찬가지로 중대한 범죄로 보는지 의문임.
 - 성범죄에 대해 ‘남자인 목사’의 순간적인 실수나 경건한 목회자가 영적인 차원에서 범한 신앙의 일탈 정도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임¹⁾.
 - 위와 같은 판단이 전적으로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런 판단이 주된 흐름을 형성해서는 곤란함. 위와 같은 판단은 성범죄에 대한 본질을 흐리게 만들 우려도 있고 무엇보다 같은 일이 반복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함.
 - 따라서 ‘성범죄’는 범죄라는 인식을 가지고 그에 대한 처분과 대처를 하는 것이 필요함
- 최근 감리교단은 감독회장이 연회 자격심사위원장, 재판위원장들을 소집하여 성범죄에 대해 엄정한 처벌을 하기로 결의하였음.²⁾
 - 감리교단이 향후 실제 어떤 식으로 대처할지 알 수는 없지만 이런 방식으로 강력한 대응 방식을 표방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음.

2. 피해자의 진술을 중대하게 고려하지 않는 ‘엄정한’ 증거조사 방식

- 권징 재판에 있어서 죄과를 인정하려면 엄정한 증거조사 방식을 취해야 하는 것은 맞음. 그러나 성범죄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진술 외에는 다른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증거조사를 함에 있어 피해자의 진술을 중대하게 고려해야 함.
 - 그러나 권징 재판에 있어서 성범죄에 대해서는 유독 피해자의 진술이 중대하게 고려되지 않는 경우가 많음.
- 물론 피해자의 진술을 무조건 믿어야 한다는 것은 아님.
 - 그렇지만, 피해자가 자신의 명예를 내려놓고 또 수치심을 감내하면서까지 구체적인 진술을 할 때에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한 상황에서 그 진술 자체에 모순점이 없는지를 분석하는 방식으로 증거조사를 할 필요성이 있음.
 - 피해자의 진술 자체에 모순점이 없어 그 진술을 신뢰할 경우 피해자의 진술 자체가 죄과를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함.
- 그런데 다수의 권징 재판에서 위와 같은 방식으로 증거조사를 하지 않고,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별도의 증거를 요하는 경우가 많음.
 - 명확한 사실인정을 위해 증거조사 과정에서 그런 요구를 할 수는 있겠지만, 별도의 증거가 없다고 해서 피해자의 진술을 배척해서는 안 됨.
 - 사안의 성격상 원래 별도의 증거가 없을 수도 있고, 별도의 증거가 있을 수 있는 경우에도 피해자가 그 증거를 입수해서 제출해야 할 책임이 있지는 않음.

1) 노컷뉴스, “계속되는 목회자 성범죄...나 몰라라 하는 교단들”(2016. 6. 9.) 참조
<http://www.nocutnews.co.kr/news/4604891>

2) 크리스찬 해럴드, “감리교, 목회자 성범죄 근절 나섰다.....”(2016. 6. 16.) 참조

3.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는 남성 중심적 상황 판단

- 성범죄 사건이 드러났을 경우 가해자는 통상 ▲‘장난’이었다거나 ▲‘단순한 호의 표시’였다거나 ▲다른 의도를 가지고 거짓 주장을 하고 있다거나 ▲‘합의’에 의한 행위였다고 주장함.
 - 그러면서 위와 같은 주장의 근거로, ▲피해자가 당시 반항을 한 흔적이 없거나, ▲그 이후에도 큰 갈등 없이 지냈거나, ▲나아가 자신의 다른 요구에 응한 적이 있거나 하는 점 등을 내세움.³⁾
- 그런데 권징재판 과정에서 위와 같은 주장이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으로 보여짐.
 - 위와 같은 근거들은 통상적으로는 가해자가 피해자를 강압적으로 추행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뒷받침해 주는 것들이기 때문에 권징재판의 판단자가 위와 같이 판단하는 것도 일응 이해가 되는 점이 있음.
- 그러나 목회자에 의한 교회 내 성범죄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근거들이 위와 같은 판단을 뒷받침해주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음.
 - 즉, ▲평소 목회자를 존경해 오던 여성 교인의 경우 목회자가 추행을 하더라도 그 의도와 의미를 제대로 파악치 못해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지 못할 수 있고, ▲이후 목사의 잘못을 인식했더라도 1회적인 실수로 보고 후속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평소와 같이 행동할 여지가 있으며, 또한 ▲다른 명백한 증거가 없는 경우 주변 사람들이 자신의 말을 믿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공격할 것으로 인식하여 그 행위 자체를 숨기는 경향이 있는바, 최소한 교회 내 성범죄 사건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근거들로 위와 같은 판단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수 없음.
- 따라서 성범죄 이후에 벌어진 상황을 판단함에 있어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채 목회자인 남성적 시각으로만 보는 것은 잘못된 결론에 이를 수 있음.

4. ‘피해자’ 보호의 방기 및 2차 가해의 방치

- 피해자가 어렵게 교회 내 성범죄를 폭로한 경우 교회는 그 말을 믿는지와 무관하게 일단 피해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음.
 - 즉, 피해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피해자가 다른 공격에 노출되지 않도록 후속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 그러나 교회는 그런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나아가서는 피해자 보호라는 개념 자체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도 많음.
 - 그 결과 피해자의 실명이 공개된다거나 피해자만 오히려 고립된다거나 피해자가 도리어 공격을 받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함.
 - 심지어 가해자가 피해자를 직접적으로 비난하고 공격하는 상황이 조성되기도 함.
- 이는 모두 ‘2차 가해’를 방지하려는 시민사회의 노력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조치들로서 가장 시급하게 보완되어야 할 사항임.

3) 뉴스앤조이, “이주노동자의 아버지 김해성 목사 성추행 의혹”(2016. 9. 11.) 참조
<http://www.newsnojy.or.kr/news/articleView.html?idxno=205740>

III. 현행법상의 성범죄 규율 및 처리 실태

1. 성범죄 처리 법률 및 규정들

- 현행 성폭력범죄와 관련 법률은 ▲형법,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이 대표적임.
- 이 밖에도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이 있음.
- 이처럼 비슷한 법이 산재하는 이유는 관련 사건이 많아지고 유형도 다양해지면서 특별법이 자주 생기고 바뀌기 때문임. 2008년 조두순 사건과 2011년 영화로 재조명된 도가니 사건 등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법정형과 구성요건(형법상 금지되는 행위)을 추가하는 식으로 법률이 제·개정됐음.
- 2013. 6. 19.부터는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도 폐지되고 강간죄의 객체가 부녀에서 사람으로 변경되는 등 큰 변동이 있었음. 그 내용은 아래와 같음.⁴⁾

개정법률 시행 전후 비교

개정 전		개정 후
고소 필요	강간죄의 고소 여부	고소 불요
부녀	강간죄의 객체	사람(성인 남성 포함)
건조물침입죄로 처벌되지 않는 한 처벌 불가	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행위	처벌 가능
벌금형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소지	징역형 또는 벌금형 (징역형 선고시 신상정보 공개도 가능)
특수강간 등 제한적	음주·약물로 인한 형량 감경 임의적 배제	거의 모든 성폭력 범죄로 확대
13세 미만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에 대한 강간 등 제한적	공소시효 적용 배제	13세 미만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에 대한 강제추행까지 확대 (강간살인죄는 연령불문 공소시효 폐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피해자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대상	연령 제한 없이 모든 성범죄 피해자
성범죄자 관리가 법무부, 여성가족부로 이원화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 규정 없음	성범죄자 관리 강화	등록·관리는 법무부, 공개·고지는 여성가족부로 각 일원화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제도 도입
읍·면·동까지만 공개 성범죄자 임의 제출	신상정보 공개범위 확대 사진 정확성 확보	도로명 및 건물번호까지 공개 접수기관이 직접 촬영
수신자료 열람에 사전영장 필요 신상정보 공유체계 규정 없음	수사기관과의 공조체계	긴급한 경우 영장없이 열람·조회 보호관찰소와 경찰 간 피부착자 신상정보 공유체계 마련

4) 법률신문, “19일부터 성범죄 친고죄 폐지”(2013. 6. 16.) 참조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75937>

○ 현행법상 성범죄의 처벌 내용은 다음과 같음.⁵⁾

성폭력범죄 조건표

	피해자별			
	19세 이상	13~18세	13세 미만	장애인
① 강간 (준강간)	형법 제297조(제299조) 징역3년 ↑ <상습1/2가중>	아동 제7조1항(4항) 무기, 징역5년 ↑	성폭 제7조1항(4항) 무기, 징역10년 ↑	성폭 제6조1항(4항) 무기, 징역7년 ↑
② 유사강간 (준유사강간)	형법 제297조의2(제299조) 징역2년 ↑ <상습1/2가중>	아동 제7조 2항(4항) 징역5년 ↑	성폭 제7조2항(4항) 징역7년 ↑	성폭 제6조2항(4항) 징역5년 ↑
③ 의제강간 ④ 의제유사 강간			형법 제305조 ③징역3년 ↑ ④2년 ↑ <상습1/2가중>	
⑤ 13세~18세 장애인아 동간음(주체:19세이상)				아동 제8조1항 징역3년 ↑
⑥ 강제추행(준강제추행)	형법 제298조(제299조) 징역10년 ↓, 1500만 ↓ <상습1/2가중>	아동 제7조3항(4항) 징역2년 ↑ 1000~3000만	성폭 제7조3항(4항) 징역5년 ↑ 3~5000만	성폭 제6조3항(4항) 징역3년 ↑ 2~5000만
⑦ 위계 위력 간음, 추행	형법 제302조 (피해자9세 ↑ 심신미약) 징역5년 ↓ <상습1/2가중>	아동 제7조5항(1,2,3항)	성폭 제7조5항(1,2,3항)	성폭 제6조5항 징역5년 ↑, 6항 징역1년 ↑ 1~3000만
⑧ 의제강제추행			형법 제305조 징역10년 ↓, 1500만 ↓	
⑨ 장애인 아동 등 추행				아동 제8조2항 징역10년 ↓, 1500만 ↓

- 준강간과 준강제추행죄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신체적이거나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폭행이나 협박을 행하지 않고 간음 또는 추행을 해도 강간죄 및 강제추행죄와 동일하게 처벌을 받음. 이를 준강간, 준강제추행이라고 함.

- 위계·위력 간음·추행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나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해서 ‘위계’ 또는 ‘위력’으로 간음하거나 추행해도 처벌을 받음. 즉, 위와 같은 경우에는 폭행이나 협박이 아니라 그보다는 약한 위계나 위력만을 행사해도 처벌을 받게 되는 것임.

여기서 위계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속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위력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힘을 말함(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도2506 판결).

- 의제강간과 의제추행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간음과 추행을 행한 사실 자체만으로도 처벌을 받음. 즉, 이런 경우에는 폭행이나 협박은 물론이고 위계나 위력이 없었다고 해도 처벌을 받는 것임.

5) 법률신문, “조건표, 점검표까지...성폭력 관련법, 판검사도 혼란스럽다.”(2015. 3. 27.) 참조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91924>

○ 교회 내에서는 준강간(준강제추행) 및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이 인정될 가능성이 큼.

-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도2001 판결

- 모 교회의 목사가 다수의 여성 교인들에 대해 추행을 행하고서도 법정에서 자신이 폭행이나 협박을 행한 적은 없으므로 무죄라고 주장하였음.
- 그에 대해 법원은 피해자인 여성교인이 가해자인 피고인 목사에 대해 ‘반항이 현저하게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고서 위 목사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였음. 즉 위에서 살펴 본 준강제추행을 인정한 것임.
- 법원은 위 여성교인이 가해자 목사에 대해 “종교적 믿음이 무너지는 정신적 충격을 받으면서 피고인의 행위가 종교적으로 필요한 행위로서 이를 용인해야 하는지에 관해 판단과 결정을 하지 못한 채 곤혹과 당황, 경악 등 정신적 혼란을 겪어 피고인의 행위를 거부하지 못하는 한편, 피고인의 행위를 그대로 용인하는 다른 신도들이 주위에 있는 상태에서 위와 같은 정신적 혼란이 더욱 가중되었다”는 점을 근거로 위와 같이 판단하였음.
- 위 사건에서 준강제추행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목사는 교회 내에서 보호자 또는 감독자의 지위가 인정되므로 위계나 위력을 행사한 추행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큼.

2. 성범죄 처리 실태

○ 현재 법원과 검찰은 성범죄를 아주 엄하게 처벌하고 있음.

- 법정형도 대폭 상향되었고, 처단형도 매우 강화되었음.⁶⁾

○ 아울러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많이 마련되었고, 피해자 진술이 있을 경우 가해자가 무죄를 입증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음.

IV. 교회 내 성범죄 근절을 위한 개선 방안

1. 온정주의의 근절 및 엄벌주의의 채택

○ 성범죄에 대해 온정주의를 근절하고 엄벌주의를 채택해야 함.

- 성범죄를 일회적인 실수나 단순 영적인 문제로 보지 않고 형사법 상의 범죄에 해당하는 문제로 보아야 함.
- 그리고 교회 내에서의 성범죄는 피해자의 영혼까지 죽일 수 있는 아주 심각한 행위라고도 인식해야 함.
- 이런 인식 하에서는 개별 목회자를 염두에 둔 온정주의가 발붙일 수 없을 것임.
- 기윤실은 얼마 전인 2016. 8. 8. 목회자의 성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조처의 일환으로 일명 '전병욱-이동현 법'을 제안하였음. 그 내용은, 종교시설 및 단체의 장 또는 종사자가 해당 시설 및 단체의 동 종교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범한 경우, 형을 가중하고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자는 것임. 이러한 흐름도 위와 같은 주장과 궤를 같이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6) 법률신문, “유기징역 상한 50년으로...성범죄 평균 형량은 30% 상향”(2011. 3. 23.)

법률신문, “성인대상 성범죄 양형기준 대폭 강화”(2012. 10. 29.)

법률신문, “성범죄 ‘친고죄’ 규정, 역사 속으로 사라져”(2012. 11. 23.)

법률신문, “대법원 양형위원회, 살인·성범죄 양형 대폭 상향”(2013. 3. 26.)

법률신문, “검찰, 성범죄 구속수사하고 구형량도 높인다”(2013. 6. 19.)

- 현재 성범죄자의 직업별 분류 중 1위가 목회자라는 기사가 흘러나오는 상황에서 교회가 갱신되기 위해서는 성범죄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입장을 취할 필요가 있음.
- 성범죄자는 강단에 설 자격이 없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천명할 필요가 있음.
- 그렇게 하려면 성범죄를 행한 목회자에 대해서는 ‘면직’과 ‘출교’를 시키는 것을 원칙적인 대응 방안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 그리고 면직과 출교 후 다른 교단에서 다시 목회를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처벌 사실을 공개할 필요도 있음. 현행법상으로도 성범죄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고 있음.

2. 예방 및 재발 방지 방안의 강구

- 성범죄 발생 시 처벌하는 것에서 나아가 성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고 혹 발생한 경우에도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광범위하게 강구할 필요성이 있음.
- 현재 모든 사업장에서 행하는 성희롱 예방 교육을 참조하여 교단 차원에서 목회자들에 대한 성범죄 예방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음.
- 목회자의 경우 자신이 성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아예 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은바, 이는 역설적으로 성범죄에 대한 분별심을 흐리는 요인으로 작용함.
- 즉 경계 상황을 염두에 둔 훈련이 전혀 되어 있지 않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경계를 넘을 수 있는 여지가 있음.
-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 하려면 교육을 통해 성범죄에 대한 대응 훈련을 하는 것이 필요함.

3. 권징조례의 개선 방안)

가. 죄과의 내용에 성범죄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함

-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현재 권징조례의 죄과에 성범죄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임.
- 성범죄에 대해서는 특별히 그것이 범죄임을 분명히 할 필요성이 크므로 죄과의 대상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함

나. 고소 시한을 연장할 필요성이 있음

- 각 교단별로 권징재판을 여는 계기가 되는 고소의 시한을 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음.
- 그런데 성범죄의 경우 그 시한 내에 고소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함. 그러므로 성범죄에 대해서는 고소 시한을 길게 설정할 필요성이 있음.
- 위에서 본 것처럼, 현재 일반 형사법에서도 특정 유형의 성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폐지해 나가고 있음.

다. 성희롱 피해자(고소인)에 대해서는 기탁금을 면제시켜 주어야 함

- 현재 대부분의 교단에서 권징재판을 여는 비용을 고소인에게 기탁금의 명목으로 부담시키고 있음.
- 교단 사정상 그렇게 해야 할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해도, 성범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함.

7) 서애란, “교회 내 성폭력 방지를 위한 지침서와 특별법 제정을 위한 제안사항”, 한국여성신학(제44호, 2000년 겨울), 141면 이하 참조.

라. 변호인의 자격 범위를 확대해야 함

- 현재 대부분의 교단에서 교단 내 목사나 장로가 아니면 변호인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 규정은 변호인이 무분별하게 선임되어 교단 내의 질서를 흐트러뜨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보이는데, 성범죄의 경우에는 그 변호인의 자격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 무한정 확대하는 것이 어렵다고 해도 다른 교단의 장로나 목사 및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에 한해서는 변호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임.

마. 재판을 원칙적으로 비공개로 해야 함

- 대부분의 교단에서 권징재판을 비공개로 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 놓고는 있지만, 성범죄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공개로 한다는 점을 명시해 놓을 필요성이 있음.

2 해외 교단의 성 정책 사례 조사

김애희 사무국장 | 교회개혁실천연대

1. 취지와 배경

- 한국교회 내에서 목회자와 관련한 성폭력¹⁾ 사건이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많은 기독교인들은 한국교회 내에 성폭력 문제가 얼마나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는지, 그 심각성에 대해 쉽게 부정하지 않는다. 사건의 전말이 언론에서 여과없이 다뤄지고, 대중의 관심이 집중되기 때문이다. 이동현 목사 사건 역시 공론화되고 23일만에 교단은 면직 처분을 결정했다. 전병욱 목사 사건에 대한 학습효과 타인지, 일부 노회원은 발빠른 조치에 나서지 않으면 사회의 지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드러내기도 했다.
- 그간 한국교회는 목회자들의 성폭력 사건이 드러날 경우 개인의 일탈 문제로 축소하기에 바빴다. 교회의 위상이나 이미지가 훼손될 것을 염려했기 때문에, 성폭력 문제는 공공의 장에서 충분히 다루어지지 못했다.
- 최근 들어, 한국교회 내에서 목회자의 성적 비행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으며, 보다 근본적인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늘고 있다. 사건화 되는 사례도 늘었다. 교단도 더 이상 기존의 미온적인 입장을 고수할 수 없는 처지가 되었다. 교단 내부에서도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1) 교회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을 어떻게 정의하고 범주화할 것인가를 놓고 다양한 견해와 입장이 존재한다. 한국 교회 상황에서 성폭력, 성희롱 뿐 아니라 목회자가 배우자 외 성인과 합의하에 갖는 외도 행위까지 포함해야 한다. 본 원고에서는 문맥에 따라 '성폭력'과 '성적 비행'을 혼용하고 있다. 번역 과정에서 '성적 비행'으로 직역하여, 용어에 담긴 의도가 충분히 전달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있다. 2006년 감리교는 목회윤리강령을 제정 공포했다. 예장 통합 역시 2015년에 열린 100회 총회에서 목회자윤리지침을 채택하였다. 그에 반해 예장 합동은 2011년부터 일부 노회원에 의해 목회자윤리강령 제정안이 상정되고 있으나, 매년 부결시켜왔다.

- 목사 스스로 자정 노력에 힘쓰겠다는 선언으로써의 의미가 있고, 신뢰도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는 기대도 있지만, 제재 수단이 미비한 상황에서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입장도 만만치 않다. 특히 지침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여부를 감독할 조직이나 평가 기준이 없다면 유명무실해질 가능성이 높다.
- 목회자 윤리지침이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이를 위반하는 목회자들에 대한 엄격한 처벌 규정과 절차가 반영되어야 한다.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²⁾.
- 교회개혁실천연대(이하 개혁연대)는 교단이 성폭력 근절을 위해 어떠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인지 제안하기에 앞서, 해외 교단의 성 정책을 조사하기로 했다. 교단 홈페이지에는 자세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었다. 성적 비행이나 아동성폭력에 관한 대처 매뉴얼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었다. 개혁연대가 참고한 대상 교단은 미국장로교회(PC(USA): Presbyterian Church (USA)), 미국 연합감리교회(UMC: United Methodist Church), 독일개신교회(EKD: Evangelische Kirche in Deutschland), 캐나다 연합교회(UCC: The United Church of Canada) 등 4대 교단의 성적비행에 관한 정책과 관련 문건을 참고하였다.

2. 정책의 구조와 특징

1) 미국장로교회(PC(USA): Presbyterian Church (USA))³⁾

- 교단 홈페이지를 통해 ‘성적 비행’ 제보 및 상담을 접수받도록 함⁴⁾.
- 헌법 내에 성적 비행과 관련, 공의회의 성적비행 정책과 어린이보호정책 채택의무, 성희롱기준, 간단한 성희롱 접수시 절차, 자발적 회개행위 등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음.
- 정책 지침서 ‘성적비행 정책과 절차: Sexual Misconduct Policy and its Procedures’ 제정, 배포
: ‘당회, 노회(대회), 그 외 기관이 적용하도록 만들어진 PC(USA) 총회의 정책 자료이며, 수록된 정책과 절차는 성적 비행 피해자와 그의 가족들, 가해 혐의자, 고소인이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고 제정 취지를 밝힘.
: 정책선언문, 실천기준, 성적 비행 혐의 제기에 대한 교회의 처리절차, 예방과 교육과 훈련, 각종 부록(인사채용과정에서 요구되는 질의의 예, 이력서 양식에 포함되어야할 항목의 예 등) 등이 수록되어 있음.
- 당회나 노회 등 공의회가 성적비행 정책을 채택하고 활용하도록 권고함(헌법에 명시). ‘성적 비행 혐의가 제

2) 징계의 기준이 되는 교단 헌법에서 성 문제를 범죄로 규정하지 않고 처벌 기준조차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관련 제도를 강화, 보완해야 한다는 요구는 이미 오래전부터 주장되어 왔다. 여신학자협의회 산하 기독교여성상담소와 교단 내 여성단체들은 ‘교회내 성폭력 금지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성윤리(성폭력) 특별위원회와 같은 기구를 상설화해야 한다’고 제안해왔다. 오늘의 자리도 그들이 고군분투하면서 작업해 놓은 결과물에 기초한 시도임에 분명히 밝히고자 한다.

3) 교단 홈페이지 주소: <https://www.pcusa.org>

4) 성적 비행에 관한 페이지 주소: <https://www.presbyteriannmission.org/legal-resources/creating-safe-ministries>

기된 경우에 관한 교회의 정책과 절차' 양식으로 제공, 배포하고 있음.

: 적용 대상자, 성적 비행의 범주, 행위의 원칙과 기준, 성적 비행에 대한 대응 담당자, 관련자(피해자의 가족 포함)에 대한 지원, 대응 절차, 위험 관리, 고용 관행 등을 수록되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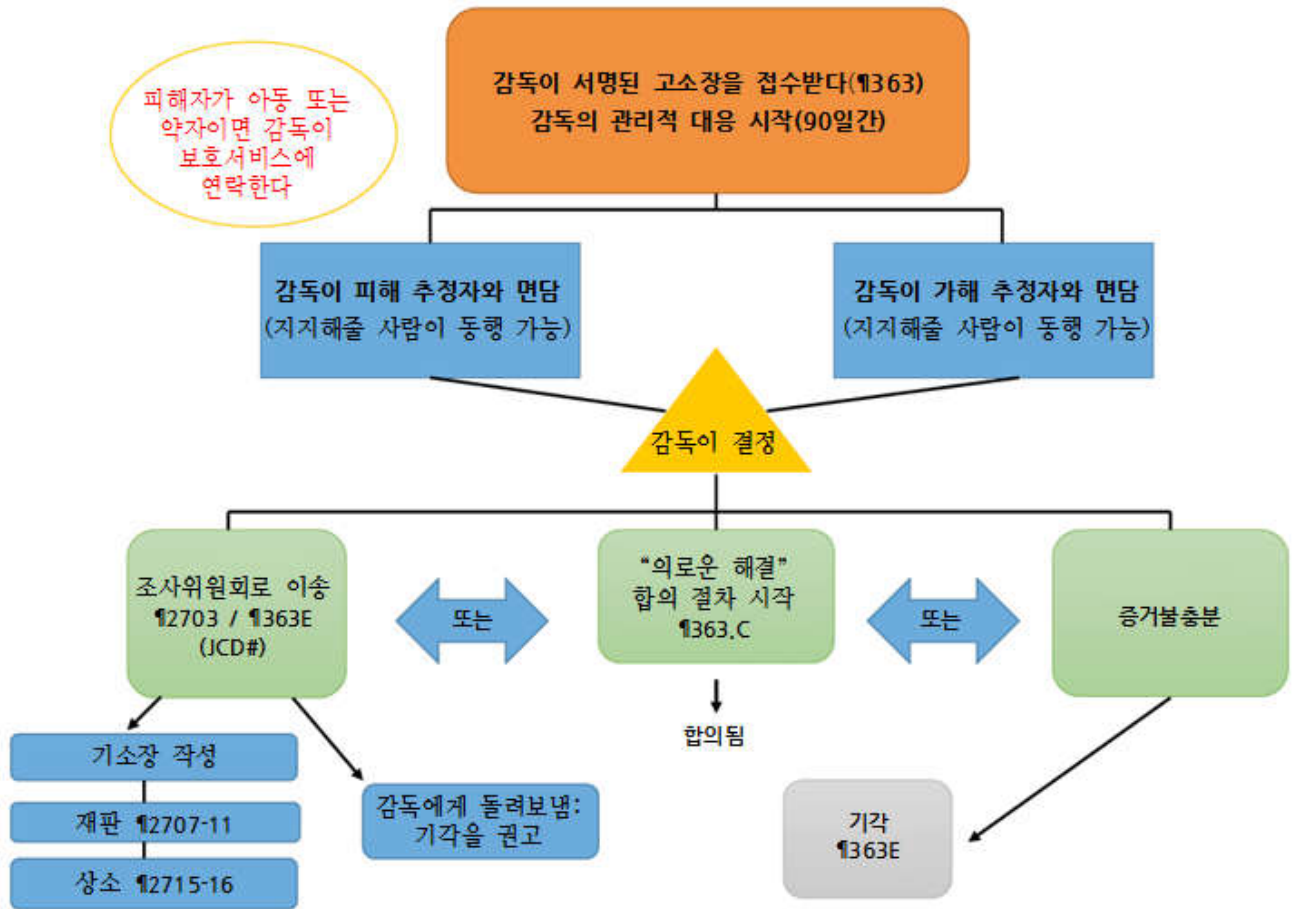
- 사역자나 직원, 봉사자 등 교회 관련 인사가 성적 비행에 연루되어 피해를 끼쳤을 경우, 교회가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함. 성적 비행 관련 조사와 재판에 드는 비용을 교회(교단)에서 부담함. 그러한 이유로, 성적 비행에 관한 규칙을 각 노회가 숙지하도록 철저히 교육하고 있음. 교회는 피해 보상을 목적으로 책임 보험에 가입되어야 함. 교회는 정기적으로 책임 보험 담당자에게 교회가 운영, 후원하는 프로그램을 고지해야 함.

2) 미국 연합감리교회(UMC: United Methodist Church)⁵⁾

- 여성위원회 산하 기구로, 별도의 페이지(<http://umsexualethics.org>)를 개설하여, 비밀이 보장되는 무료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해당사이트에는 성적 비행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교단의 정책을 안내하기 위한 인쇄용 전단지, 목회자 성적 비행에 관한 보고서 양식, 목회자의 성적 비행 이후 교회공동체의 회복과 치유를 돕기 위한 안내서, 성적 비행 대처 정책 및 절차에 대한 체크리스트, 과거 성적 비행을 저지른 목회자가 목회 현장에 복귀하고자 할 때 필요한 10가지 조건, 참고 문헌 등에 관한 자세한 자료가 제시되고 있음.
- '성적 비행에 관한 지역교회의 정책개발 지침서'를 제공하고 있다. 성적비행에 대한 정책이 왜 필요한지, 효과적 정책의 주요 구성요소는 무엇인지, 사회법관련 고려사항, 정책의 보급, 교육, 검토와 개선 필요, 정책의 시행 등에 관한 내용을 수록하고 있음.⁶⁾
- 미국상담협회에서는 윤리강령을 통해 상담가와 내담자 사이의 성적 관계를 철저히 제재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상담가의 면허를 박탈한다. 미네소타주 등 일부 주에서는 의사나 상담가와의 성폭력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목회자의 성적 비행 역시 범죄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 umsexualethics.org 사이트에 관련 안내를 제공하고 있음.

5) 교단 홈페이지 주소: <http://www.umc.org>

6) <http://umsexualethics.org/wp-content/uploads/2015/08/Local-Church-Policy-Alert-REV.pdf>



절차 진행 중 직무정지 규정: 1363.1d, 2704.c / 연회안수사역부(Board of Ordained Ministry) 임원회의 권고로 감독이 시행 / 권리 규정 1334

3) 독일개신교회(EKD: Evangelische Kirche in Deutschland)⁷⁾

- 교단 홈페이지를 통해 ‘성적 비행’ 제보 및 상담을 접수받도록 함.⁸⁾
: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상담기관과 담당자의 명단과 연락처, 수사기관의 연락처 등을 안내함.
- 공무에 관한 비밀 유지 의무에서 두가지 예외 조건이 있는데, 하나는 뇌물 횡령에 관해, 나머지는 성범죄에 관한 경우다. ‘성범죄는 철저히 성폭행 피해자 위주로 진행되며, 징계처리나 혹은 다른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도 피해자 위주로 이루어진다. 왜냐하면 교회의 지도부나 감찰관이 인지한 경우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의무이기 때문이다’고 규정함.⁹⁾
- 정책 지침서 ‘교회 직원으로 인한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안내서: Hinschauen-Helfen-Handeln’
: 서언, 사안(법적 규정, 용어), 피해자의 증인, 가족을 위한 교회의 지원(지위, 상담기관의 업무), 성적자기결정권에 반한 범죄 의혹 처리 규칙, 성적자기결정권에 반한 범죄 의혹에 대한 교회의 원칙(소속교회의 피해와 위기 대처 원칙, 의혹에 대한 대처 진단), 성추행에 대한 대처, 도움과 지원 등이 수록되어 있음.

7) 교단 홈페이지 주소: <http://www.ekd.de>

8) <http://www.ekd.de/missbrauch>

9) 목회자법 제6조 2항 참조, http://www.kirchenrecht-ekd.de/list/geltendes_recht

- 여성이 처한 폭력과 차별에 관한 전반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다. 여성에 대한 차별적 인식, 성역할, 신학적 접근, 결의, 여성의 이중부담 등의 문제를 교단의 입장에서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다.¹⁰⁾
- 그 외에도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 처리규정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음.¹¹⁾

4) 캐나다연합교회(UCC: The United Church of Canada)¹²⁾

- ‘성적 학대예방 및 대응 정책 및 절차: Sexual Abuse Prevention and Response Policy and Procedures’에 관한 지침서를 만들어, 교역자가 교회나 기관에 고용될 때 성적 비행정책에 관한 지침서를 숙지하고 서약하는 절차를 밟아, 사역자가 책임을 인지하도록 조치하고 있음.
- ‘성적 학대예방 및 대응 정책 및 절차’(Sexual Abuse Prevention and Response Policy and Procedures)는 총 39페이지로 신학 선언문, 서언, 정책, 정책과 절차의 적용 대상, 미성년자 관련 사건, 고소절차 흐름도, 부록 I. 역할과 책임, 부록 II 직무 정지를 고려할 때 검토해야할 요건, 부록 III 용어 정의, 절차를 위한 체크리스트(고소인과 일하는 컨설턴트를 위한 체크리스트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1992년 34회 총회에서 채택).
- 1년에 한번 교회에서 급여를 받는 모든 교역자를 대상으로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교육은 3일간 진행되며, 연회에서 주관한다.
- 성적 학대에 관한 연회(노회) 조정위원회 등 관련 기구를 구성하는데 있어, 위원은 남성과 여성을 모두 포함시키고, 위원의 다수는 여성이어야 한다는 원칙을 명문화하고 있다.

3. 쟁점별 상세 내용

1) 성폭력에 대한 정의와 범주

- ‘성적 학대’, ‘성적 비행’을 포괄적인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
- 미국장로교회는 성적 비행을 아동¹³⁾성추행, 성추행, 강간 또는 강제, 위협, 협박에 의한 성접촉, 성적 부정행위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한다. 이뿐 아니라 문자나 이메일 등 통신물을 이용한 희롱이나 불쾌한 성적 농담, 교회에서 성인물을 보는 것 또한 비행으로 간주한다.

=> 부정한 성적 행위를 명확한 기준에 의해 개념화하고, 유형화하는 것은 피해자들의 자각을 도울 수 있다. 자신이 경험한 피해 행위에 대해 정확하게 범죄로 인식하게 된다.

2) 목회자 성폭력, 성적 비행에 명확한 규정과 책임

- ‘교단의 목회적 서비스나 전문적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학대로부터 보호하고자 한다’고 정책의 취지를 밝히고 있다. 교단의 구성원이나 지지자가 아니더라도 대상에 포함된다. 어떤 사람

10) Gewalt gegen Frauen als Thema der Kirche(여성에 대한 폭력) 참조.

11) Auf Grenzen achten-Sicheren Ort geben(Prävention und Intervention, Arbeitshilfe für Kirche und Diakonie bei sexualisierter Gewalt) 참조

12) 교단 홈페이지 주소: <http://www.united-church.ca>

13) 미국장로교 PC(USA)에서는 아동의 연령을 18세 미만을 규정하고 있다.

이든 본 교단의 사역자나 직원으로부터 전문적인 서비스나 목회적 서비스를 이용하여, 목회적 돌봄, 상담, 결혼 워크숍, 탁아소 등의 도움을 얻고자 했다면, 그 어떤 방식으로든 학대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캐나다연합교회(UCC) 지침서 인용).

- 성적 비행은 권위와 힘을 남용하여 기독교윤리상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으로, 신뢰관계를 악용하여 타인을 이용하는 행위이며, 사적인 쾌락을 위해 학대하고, 착취하고, 정의롭지 않은 수단을 사용하는 것이다. 교구 교인, 내담자, 직원, 혹은 학생이 성적 접촉을 먼저 시작하거나 성적 접촉을 받아들인다 할지라도, 성적 관계를 금지할 책임은 담임목사, 교역장로(목사), 사역장로(장로), 집사, 직제사역자, 고용인, 봉사자, 상담자, 감독, 교사 또는 고문에게 있다(미국장로교회 지침서 인용).

=> 교회내성폭력이나 성적 비행에 있어, 모든 책임은 목회자가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목회자는 교인에 대해 절대적인 힘의 우위에 있다. 목회자에 비해 교인들과 전도사는 항상 자원과 힘의 사용에 있어 약자로 위치한다. 의미 있는 동의란 있을 수 없다. 또한 표면상 합의하에 이뤄진 관계라 할지라도 목회자에게 요구되는 도덕적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비행임은 분명하다.

3) 고소인의 자격 조건

- 미국장로교회(PC(USA))는 피해자가 아닌 사람, 이를테면 피해자의 부모, 법적 보호자, 변호인 등도 고소인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해자가 아동일 경우, 대리할 수 있는 성인을 선정되어야 한다.

=> 교회 성폭력 문제가 개인의 문제로 취급되지 않고 문제 해결의 역할과 책임이 피해자 개인에게 전가되지 않으려면, 피해자 외에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는 관련자들의 직접 고소가 가능해야 한다.

4) 대응 담당자(또는 상담자)의 선임과 역할

- 캐나다연합교회(UCC)는 소속원에 의해 성적 피해를 입었다는 제보가 발생하면, 연회(노회)는 ‘컨설턴트 팀’을 구성한다. 일종의 상담원 또는 자문과 같은 역할로, 단순한 사건에 접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고소인(또는 피고소인)의 고소 행위 전반에 조력자로 역할한다.¹⁴⁾ ‘컨설턴트’는 피해자(또는 고소인)를 만나 피해 내용을 청취하고, 교단의 성 정책과 절차를 안내한다. 또한 고소인이 고소장을 작성하도록 안내하고, 고소인이 서명한 고소장을 연회(노회) 인사담당 교역자에게 제출한다. 모든 대화 내용은 문서로 기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이를 위해 ‘컨설턴트’는 캐나다연합교회의 성적 학대에 대한 정책과 절차를 숙지해야 하고, 모든 유형의 성적 학대와 연관된 사안과 최근 동향을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모든 성적 지향에 대하여 긍정적이고 수용적인 태도를 취해야 한다. 고소인에게 목회적 돌봄이 제공될수록 관련 기관에 연계하고, 연회(노회)에서 받을 수 있는 도움(교육자료나 상담센터, 여성단체 등 기관, 법률 고문과 의료고문, 상담사나 치료사 연결 등)이 무엇인지 안내해야 한다. ‘컨설턴트’는 자신이 변호인이 아님을 고지하고, 법적으로 변호사나 법적 고문의 도움을 받을 것을 조언하는 역할을 한다.
- 컨설턴트 팀은 연회(노회) 임원회에서 임명하며, 인원은 다섯 명 이상으로 하되, 남성과 여성을 공평하게

14) Sexual Abuse Prevention and Response Policy and Procedures: Appendix I: Roles and Responsibilities 중 Consultants 참조

대표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 여성이 다수가 되어야 한다. 임기는 5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

- 미국장로교회(PC(USA)) 또한 성적 비행이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 1차적으로 접수 역할을 수행할 ‘성적 비행 대응 담당자’를 임명한다. 먼저 해당 신고를 접수하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는 것이 주된 역할이다. 대응 담당자가 수행할 최우선 과제는 고소인 또는 추정된 피해자가 문제가 어떻게 해결하길 원하는지 스스로 결정하도록 안내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혐의사실이 주장된 피고소인의 권리 역시 보호하기 위해 적절하고 전문적인 관심을 보여야 한다.
- 단, 의료적 조언, 심리적 조언, 사법적 또는 교회법에 관한 조언을 제시할 수 없다. 또한 성적 비행이 고발되어 교회의 사법 절차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증언할 수도 없다.

=> 대응 담당자는 교단에서 임명한 상담자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업무의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다면, 교단 차원에서 현장에서 전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상담원을 양성하는 방안도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 교단의 공정한 역할과 개입은 교회와 교인에게 안정감을 제공하고 신뢰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5) 직무 정지에 대한 고려와 조건

- 캐나다연합교회(UCC)는 재판에 들어가기 전에 직무정지 여부를 먼저 판단한다. ‘컨설턴트’가 피고소인을 만나 고소장을 전달하고 나면, 담당 재판국장 또는 재판국원, 조정위원회 위원, 연회(노회) 인사담당 사역자가 직무정지를 결정한다. 조사와 재판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피해자를 비롯한 관련 이해당사자들에 건재함을 과시하여, 2차 피해를 줄 위험을 차단할 수 있다. 캐나다연합교회는 절차에 직무정지 시기와 요건을 명시하고 있다.
- 부록 자료로 ‘직무정지를 고려할 때 검토할 요건’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성 학대 예방과 대응 정책 안에서 직무정지를 시행할지 여부를 검토할 때 다음과 같은 요건을 고려해볼 것을 제안한다.

- 1) 관련 업무 공동체에 약점이 될 만한 부분이 있어 위험(리스크)이 계속되고 있는가?
- 2) 사역지가 고소된 지역 및 고소인의 지역과 밀접한 곳에 있는가, 다소 떨어져 있는가?
- 3) 주장된 내용에는 일정 수준의 폭력이 포함되어 있었는가?
- 4) 피고소인에 대한 고소 건이 하나인가, 아니면 다수의 고소 건이 존재하는가?
- 5) 주장된 내용은 최근이었다는 것인가 아니면 수년 전의 일이었다는 것인가?
- 6) 주장된 범법 행위가 보다 긴 시간동안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는가, 아니면 일회적인 사건인가?
- 7) 목회 사역자나 평신도 사역자가 직무정지를 요청하고 있는가?
- 8) 직무정지를 해야만 고소인, 변호인 및 가족과의 접촉을 확실히 막을 수 있겠는가?
- 9) 주요 인물(principals)이나 사역지에 관하여 고려했을 때 직무정지가 건강과 안녕을 위한 최선의 선택인가?

=> 피해자를 보호하는 동시에, 가해자의 회복을 위해 직무 정지를 고려해야 한다. 그 과정은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6) 고용 과정에서의 엄격한 심사 절차 준수

- 기록 보존: 교회는 모든 피고용인과 봉사자, 교역장로(목사) 등 각각에 대하여 인적 사항에 관한 기록을 유지할 것이며, 본 정책과 관련된 문서가 포함되도록 한다. 지원서, 질의응답 내용, 신용조회 결과 등 고용과 관련한 모든 기록을 별도 보관한다(미국장로교회(PC(USA))).
- 사역자 청빙: 전 심사과정에는 과거에 성적 비행으로 정식 기소된 사실이 있는지를 알아내기 위한 질문이 구체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지침서에서 제시한 예를 인용하면, ‘나는 민형사상 고소를 당한 사실이 없으며 성적 비행으로 정식 처분을 받을 적이 없고, 성적 비행과 관련된 이유로 퇴직하거나 해고 당한 적이 없음을 증명합니다’라는 항목이 반영된 서약서에 사인하게 하고 해당 문건을 보관해야 한다.
- 지원자는 추천인을 통해 신원 증명 과정을 거쳐야 한다. 또한 대화 내용은 인사 기록에 되어야 한다. 지원자가 거짓 이력을 제공했을 때에는 고용대상에서 제외된다.

=> 청빙과정에서 성 정책 지침서를 숙지하고 동의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과거의 성적 비행으로 징계받거나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지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

7) 소속 교회에 대한 목회적 지원 절차

- 미국장로교회(PC(USA))는 성적 비행에 연루된 사람이 목사라면, 임시목사를 해당 교회에 파견하여, 갈등 상황에서 발생하는 혼선을 조정하게 한다. 또한 목회적 돌봄이 중단되지 않도록 노력한다. 성적 비행의 결과로써 목사가 떠난다면, 극단적인 경우에는 임시목사가 연장된 기간 동안 그 개체교회와 함께 일할 수도 있다.
- 또한 목사가 성적 비행에 대해 유죄로 판명된다면, 훈련 받은 임시직 목사, 교회에서의 성적 비행의 노력과 정치 체계에 식견이 있는 노회 대표, 성적 비행을 다룬 경험과 지식이 있는 상담사와 치료사, 법률 대변인, 보험 대변인을 파견하여, 수습 과정을 돕는다.

=> 목회자 성적 비행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는 누구인지, 그로 인한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폭넓게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 피해자와 가해자 뿐 아니라 교회 공동체 전체가 혼돈에 빠질 수 있다. 목회자에 대한 불신은 교회에 대한 불신으로 연결될 수 있다. 목회자가 교회를 떠나도 목회자를 쫓아 교회를 이탈하는 경우도 많다. 갈등상황에 대한 이해와 목회 경험이 풍부한 목회자들이 임시적으로 목회 공백을 최소화하고, 돌봄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8) 가해자에 대한 회복 지원

- 캐나다연합교회(UCC)는 고소인이 사역자라면 정직이 결정된 이후에도 임금과 복지를 제공할 것을 권고한다.
- 미국장로교회(PC(USA))는 총회와 법인은 피해자와 그 가족뿐 아니라 피고(가해자)에게도 치료와 보살핌을 제공해야 한다. 가해자가 교역장로(목사)라면, 이는 노회의 관할 하에 있다는 내용을 헌법에 명시하고 있다. 또한 성적 비행에 대하여 무혐의로 밝혀질 경우, 총회와 법인체는 그들이 가진 권한 내에서 가능한 한 널리 이러한 판결이 알려야 한다.

- 가해자에게 정신적 지원이나 전문적 상담을 찾을 것을 제안하되, 노회 간부나 서기와 같은 직위에 있는 인사들은 징계 처리에 잠재적으로 관여하고 있으므로, 피고(가해자)와 개인적인 상담 관계를 맺지 않도록 한다.

=> 교회의 변호와 지원은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다뤄져야 한다. 목회자라는 지위와 교회 생리에 대한 이해를 이용하여, 비호 그룹을 조직하려는 시도는 제재되어야 한다.

4. 결론: 왜 정책은 마련되어야 하는가?

- 1) 교회는 모든 사람들은 안전한 공간이라는 인식을 심어주어야 한다. 정책 문서는 모든 사람들이 지역교회에서 어떠한 형태로든 일어나는 성적 비행에 대해 가볍게 여기거나 묵과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발현이다. 불공정한 정책은 성폭력에 연루된 목회자가 다시 재기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심어준다.
2. 구체성이 결여된 정책은 불필요한 혼란과 분쟁을 가져올 수도 있다. 교회와 교단에 대한 불신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마저 파괴되는 사례를 흔치 않게 발견할 수 있다.
3. 정책을 개발하고, 적용·보완하는 과정은 목회자와 교인이 함께 성적 비행을 예방하고 대처해나갈 수 있도록, 학습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정책을 보급하고 정책을 놓고 대화하는 과정을 통해, 공동체 일원이 각성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다.

2부 토론

- **사회자:** 박득훈 목사(교회개혁실천연대)
- **패널:** 발제자 2인
 - 권대원 집사(삼일교회)
 - 최유진 교수(송실대 겸임교수)
 - 홍보연 목사(감리회 선교국 양성평등위원회 공동위원장)

교회개혁실천연대 소개

mission
mission

교회개혁실천연대는 뜻있는 성도들과 목회자들에 의해 2002년 11월 24일 창립된 단체입니다. 우리는 한국교회의 개혁과 건강한 교회를 통한 사회개혁을 일구어냄으로써 하나님나라를 펼쳐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기독교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는 **신앙운동**,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갈 일꾼을 양성하는 **교육활동**,
교회문제로 고통당하는 이들을 돕는 **교회상담**,
한국교회에 발생하는 중대한 문제를 사랑으로 지적하는 **이슈파이팅**,
정관 및 재정조례 보급, 목회자 청빙 등 한국교회의 건강한 구조 확립을 위한 **교회대안제시**,
그리고 건강한 교회를 꿈꾸는 이들과 **함께하는 개혁**에 힘을 다할 것입니다.

story
story



‘교회 성폭력 근절을 위한 정책 제안’ 포럼

발행일 | 2016년 9월 19일
발행인 | 박득훈·방인성·백종국·윤경아
편집인 | 김애희
편 집 | 이연정
발행처 | 교회개혁실천연대
(150-034) 서울시 영등포구 영신로34길 10 영남빌딩 205호
Tel 02-741-2793 Fax 02-741-2794
protest@protest2002.org
www.protest2002.org